

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6다6453(본소), 2016다6460(반소) 판결 [대여금 ·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6다6453(본소), 2016다6460(반소)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6. 1. 7 선고 2015나4276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A

피고(반소원고), 상고인B

판결 선고 2016. 5. 26.

원심판결울산지방법원 2016. 1. 7. 선고 2015나4276(본소), 2015나4283(반소)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N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서 정한 소액사건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소액사건임이 분명한 이 사건에서 피고(반소원고)가 상고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사유는 위법 제3조가 정한 상고허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박상욱

대법관이상훈

주심대법관김창석

대법관조희대